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5일, 이헌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헌승의원)

현행법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 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유실동물’과 ‘유기동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4조~제37조, 제39조, 제49조, 제94조)

현행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실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실수나 사고로 잃어버린 동물이고 ‘유기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유실행위와 유기행위에 대한 정의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유실·유기동물 관련 규정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대상과 관계된 것으로, 동물의 구조·보호 시 해당 동물이 유실동물인지 유기동물인지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어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유실·유기동물’ 정의 규정은 구조·보호 등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

를 구분할 실익이 적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나.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개정안은 이 중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한정하여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83조, 제85조, 제97조)

현행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은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종이므로 이들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는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① 동물생산업, ② 동물수입업, ③ 동물판매업, ④ 동물장묘업으로, 이 중 동물수입업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과 유사하게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취급하

는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갱신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영업허가 갱신제도를 운영할 때,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므로 허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허가의 유효기간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허가 및 갱신허가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과 ② 유효기간이 있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의 승계한 자에 대한 유효기간의 적용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① 동물수입업도 영업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② 영업허가 갱신제도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과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행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며, ③ 허가의 갱신 여부 판정을 위한 현장점검 시 해외사례와 같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지방자치단체는 ① 관련 영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전라남도)과 ② 영업허가 갱신제도 도입은 업무량 가중 및 영업자 민원 등을 고려할 때 과한 규제로 판단되나, 필요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경상남도)을 제시하였음.

한편, 동물생산자협회는 영업허가 갱신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현재 영업허가 관련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 원칙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고령의 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반려동물협회는 현재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 규정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허가 갱신제도 도입 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